

일본의 관광사업 등록기준

I. 서론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사업 중 여행업 및 호텔여관업에 대하여서는 여행업법 및 국제관광호텔정비법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관광사업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행업법 및 관광호텔정비법을 중심으로 그 등록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여행업의 등록기준



1) 영업업무에 관한 거점이 되는 영업소와 여행업자의 등기상 본점소재지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여행업 등록제도의 목적

여행업법은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 유지, 여행의 안전확보 및 여행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수를 받고 '여행업무(법 제2조 제3항)를 취급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는 국토교통성장관(시장, 도지사)의 등록을 얻어야만 한다(여행업법 제3조).

2. 등록의 종류

제1종 여행업에 관해서는 국토교통성장관, 제2종·제3종 여행업 및 여행업자대리업에 관해서는 여행업무에 관한 주 영업소¹⁾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여행업·여행대리업의 취급업무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등록행정청	기획여행				수탁여행		수배여행	
			모집형		수주형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여행업	제 1 종	국토교통성장관	○	○	○	○	○	○	○	○
	제 2 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	○	○	○	○	○	○
	제 3 종		×	○	○	○	○	○	○	○
여행업자대리업			×	×	2)					

3. 등록신청

(1) 등록신청방법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현청산업노동부 관광컨벤션과에 신청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법 제6조의 2), 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경과 후의 등록은 당연히 실효된다.

(2) 여행업자 갱신등록신청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현청산업노동부 관광컨벤션과에 신청한다.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전 2개월까지 신청해야 한다(규칙 제1조). 등록유효기간은 갱신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법 제6조의 2).

(3) 여행업자 변경등록신청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현청산업노동부 관광컨벤션과에 신청한다. 유효기간은 신규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다.

(4) 여행대리업자 신규등록신청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현청산업노동부 관광컨벤션과에 신청한다.

4. 기준자산액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업무의 범위별로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재산적 기초(기준자산액)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준자산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법 제6조 제1항 8호). 기준자산은 여행업의 업무범위별로 다르다. 또한 취급금액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2) 여행대리업의 업무범위는 그 소속여행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맞춤형 법제정보

(1) 종별 기준자산액 및 최저영업보증금·최저변제업무보증금분담금

등록업무범위	기준자산액	구분	최저영업보증금 (공탁금)	최저변제업무 보증금분담금
제2종	700만 엔	협회비가입	1,100만 엔	-
		보증사원 ³⁾	-	220만 엔
제3종	300만 엔	협회비가입	300만 엔	-
		보증사원	-	60만 엔

(2) 종별 기준자산액 산정방법

신청 직전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조서에 의해 산출한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기준자산액 = 자산총액 - 창업비, 이연자산 - 영업권 - 불량채권 - 부채의 총액

영업보증금(공탁금)의 액은 여행업의 업무범위별 또는 연간 거래액에 의해 다르다. 여행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100일 이내에 등록행정청에 거래액을 보고해야 한다.

(3) 기준자산액이 부족한 경우의 조치

증자를 행하는 경우에는 '증자 후의 등기부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

증여·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와 증여 또는 채무면제 후의 대차대조표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 3) 여행업협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사원의 구분이 적용된다. 등록과 동시에 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이 될 예정인 경우에는 사전에 여행업협회로부터 '입회확인서' 또는 '입회승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5. 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 선임

(1)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제도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 유지, 여행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로 인하여 여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영업소별로 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업소의 여행업무의 취급에 관한 관리, 감독사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영업소별로 여행업무취급관리자를 확실히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여행업법 제6조 제1항 7호).

(2) 여행업무 취급관리자의 업무

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여행에 관한 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여행업무의 취급요금의 게시에 관한 사항
- * 여행업 약관의 게시 및 비치에 관한 사항
- * 여행조건의 설명에 관한 사항
- * 거래조건의 설명에 관한 사항

- * 계약서면의 교부에 관한 사항
- * 기획여행의 광고에 관한 사항
- * 운송 등 서비스의 확실한 제공, 기획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사항
- * 여행에 관한 고충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계약체결 연월일, 계약의 상대 및 그 밖의 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명확한 기록 또는 관계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3) 선임한 여행업무취급관리자가 전부 결한 경우 새로운 여행업무취급관리자를 선임하기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선임하는 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 자격

종별	선임하는여행업무취급관리자의종별
제1종 여행업	종합여행취급관리자
제2종 여행업	종합여행취급관리자 또는 국내여행취급관리자 ⁴⁾
제3종 여행업	
여행업자대리업	

다른 영업소에서의 겸직이 금지되며, 상근 고용하여야 하고, 여행업부문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의 대규모 영업소는, 한 사람의 여행업무취급관리자로는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여행취급관리자를 선임

한다.

6. 등록의 거부

등록신청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한다(법 제6조).

- ① 여행업 또는 여행업자대리업의 등록을 취소당하여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졌거나 본법에 의한 벌금형에 처해져 그 집행종료 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③ 신청 전 5년 내에 여행업무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
- ④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이 앞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성년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않은 자
- ⑥ 법인으로, 임원 중 ① 내지 ③ 또는 ⑤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⑦ 여행업무취급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⑧ 국토교통성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산적 기초를 갖고 있지 않은 자
- ⑨ 여행업자대리업을 하는 자가 2이상의 여행업을 대리하는 경우



4) 국내여행업취급관리자만을 선임하는 영업소는 '국내여행업무' 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

Ⅲ. 호텔업 및 여관업 등록기준

1. 개요

일반적인 호텔업 및 여관업에 관하여는 여관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등록기준도 여관업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광사업으로서의 호텔, 여관에 대하여서는 국제관광호텔정비법에 의하여 관광청 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수성령 1993년 3월 15일 제37호 '국제관광호텔정비사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호텔업의 시설기준

(1) 객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객실(이하 '기준 객실'이라 함)의 수가 최저 15실 이상 있거나 기준객실수가 객실총수의 1/2 이상일 것을 요한다.

* 양식의 구조 및 설비를 가질 것

- 책상, 테이블, 의자 및 양복을 거는 설비를 갖출 것(싱글룸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생략할 수 있다)
- 와실, 양실 절충의 객실에는 다다미 부분의



5) 식당은 객석부분의 면적이 $0.2\text{m}^2 \times \text{수용인원}$ 이상이 필요하며, 주방, 배선실, 대합장소, 식당 내의 다다미바닥 부분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이 양식의 거실부분의 바닥면적을 넘는 것은 호텔기준객실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입구의 창호는 견고한 것으로 적절한 방음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 * 바닥면적이 싱글룸은 9m^2 이상, 다른 객실은 13m^2 이상일 것
- * 적당한 채광이 가능한 개구부가 있을 것
- * 욕실 또는 샤워실 및 화장실이 있을 것
- * 냉수 및 온수가 나오는 세면설비가 있을 것
- * 입구에 시건설비가 있을 것
- * 전화가 있을 것

(2) 로비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로비 등의 공동 사용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 양식의 구조 및 설비가 있을 것
- 입구 부근에 남녀 구별되는 공용 화장실이 있을 것

*로비의 필요면적

수용인원	면적
100인 이하	20m^2
101 ~ 500인	$0.2\text{m}^2 \times \text{수용인원}$
501 ~ 1000인	$0.15\text{m}^2 \times \text{수용인원} + 25\text{m}^2$
1001 ~ 2000인	$0.075\text{m}^2 \times \text{수용인원} + 100\text{m}^2$
2001인 이상	$0.05\text{m}^2 \times \text{수용인원} + 150\text{m}^2$

(3) 식당⁵⁾

식당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양식의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적당한 주방이 부족되고, 적당한 수의 의자 및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을 것
- * 입구 부근에 남녀 구별되는 공용 화장실이 있을 것

(4) 안전성

환경여관업법, 소방법, 건축기본법이나 관계 조례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건물객실 등의 배치가 적정하고, 건물의 디자인, 사용재료, 시공 등이 양호할 것

(6) 현관

손님, 기타 관계자가 영업시간 중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현관이 있을 것

(7) 프론트

손님의 응접, 숙박자명부의 기입 등의 사용에 제공되는 프론트가 있을 것

(8) 냉·난방 설비

로비 등, 프론트, 호텔기준 객실, 식당, 호텔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손님이 사용하는 복도에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기후가 적당한 지역에 있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6) 표지는 외국어(영어에 한하지 않음) 또는 알기 쉬운 그림문자로 명료하게 게시.

(9)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손님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하의 층으로부터 4 번째 이상이 되는 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가 필요함.

(10) 표지⁶⁾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의 표시를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표시	장 소
관내시설, 설비의 배치표시(관내배치도)	현관, 로비, 프론트
객실명(방번호), 식당, 공용시설의 표시	당해 시설의 외측
회계장소의 표시	회계장소
피난설비, 소화기 등의 배치도 및 피난 경로의 표시	객실
비상구예의 방향표시	복도, 계단, 통로
피난설비, 소화기의 설비 및 사용방법	당해 시설

(11) 비상시 안내서

객실에는 비상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본어 및 외국어로 기재한 안내서를 비치할 것

(12) 양조식 호텔에는 양식의 조식 (커피, 홍차, 토스트 등의 빵류, 계란요리 등)을 제공할 것

(13) 손해배상책임보험

현금 한도액은 최저 1명당 7천만 엔 이상, 사고 1회당 7억 엔 이상일 것

3. 여관업의 시설기준

(1) 여관기준객실

아래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객실(기준객실)의 수가 최저 10실 이상이거나 기준객실이 객실 총수의 1/3 이상일 것

- * 객실 전체가 일본와실로서 조화가 있을 것
 - 도코노마, 양복을 거는 설비 및 신발을 벗어 놓는 곳, 옆방과의 사이에는 벽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 도코노마에는 장식 기둥, 장식 다다미가 있어야 한다.
- * 바닥면적이 싱글룸은 7㎡ 이상, 다른 객실은 9.3㎡ 이상일 것
- * 냉난방 설비가 있을 것(단, 기후상 설비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 세면시설이 있을 것
- * 입구에 시건장치가 있을 것
- * 전화가 있을 것

(2) 샤워실 및 화장실이 설치된 여관기준 객실의 수

욕실 또는 샤워실 및 화장실이 딸린 기준객실의 수가 2개 이상 있을 것

(3) 냉·온수 세면시설이 있는 여관기준 객실의 수

냉수 및 온수가 나오는 세면설비가 있는 여관 기준객실의 수가 4개(여관기준객실의 수가 15개가 넘을 경우에는 초과여관기준객실수의 1/4에 4실을 더한 수) 이상일 것

(4) 로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손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간이 있을 것

- * 건축 내부와 조화가 있으며, 손님의 통상의 이용에 적당할 것
- * 입구 부근에 남녀 구별되는 공용 화장실이 있을 것

(5) 안전성

환경여관업법, 소방법, 건축기준법 및 관련되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할 것

(6) 건물

객실의 배치가 적정하고, 건물의 디자인, 사용 재료, 시공 등이 양호할 것. 정원은 이것과 같은 부류로 대지 내에 있을 것

(7) 프론트

손님의 응접, 숙박자명부의 기입 등의 사용에 제공되는 프론트가 있을 것

(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손님의 이용에 제공되는 최하의 층으로부터 4번째 이상이 되는 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이용이 가능한 승강기가 필요함.

(9) 공용의 가족목욕탕

공용의 욕실 또는 샤워실(이용자가 일정시간 이용가능하고, 입구는 시건장치가 있을 것. 대욕실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모두의 여관기준객실에 욕실 또는 샤워실이 있을 필요는 없음.

(10) 공동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없는 여관기준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객실과 같은 계단 또는 그 부근에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입구로부터 구별되는 공동 화장실이 설치될 것

- * 복도, 로비 등에 있는 자에게 변기가 보이지 않도록 벽이 있을 것
- * 수세식이고 좌변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11) 표지⁷⁾

다음에 열거하는 장소의 표시를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표 시	장 소
안내시설, 설비의 배치표시(안내배치도)	현관, 로비, 프론트
객실명(방번호), 식당, 공용시설의 표시	당해시설의 외측
회계장소의 표시	회계장소
피난설비, 소화기 등 배치도 및 피난경로의 표시	객실
비상구예의 방향표시	복도, 계단, 통로
피난설비, 소화기의 설비 및 사용방법	당해시설



7) 표지는 외국어(영어에 한하지 않음) 또는 알기 쉬운 그림문자로 명료하게 게시.

(12) 비상시 안내서

객실에는 비상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본어 및 외국어로 기재한 안내서를 비치할 것

(13)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액은 최저 1명당 7천만 엔 이상, 사고 1회당 7억 엔 이상일 것

4. 인적 및 경영상황에 관한 기준

등록호텔 및 여관은 최저 1명의 '외국인접객주임자'를 선임할 것

(1) 외국인 접객주임자

① 외국인 접객주임자에게 요구되는 업무

- *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자에 대하여 평상시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지도, 조언을 하는 것
- * 외국인 손님으로부터 실제 불만이 발생한 때에 책임지고 이에 대처하는 것
- * 외국인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의 연수계획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것

② 외국인 접객주임자의 요건

- * 호텔(여관)에 최저 3년 이상 프론트계 등 접객업무경험이 있을 것. 당해 호텔, 여관이 아니어도 기존의 등록 호텔, 여관에

서 3년 이상의接客경험이 있으면 가능하다.

* 호텔, 여관에 있어서 외국인을 대하는 것이 가능한 어학능력이 있을 것(아래 참조)

- 영어점정 3급 이상
- 토익 220점 이상
- 토플 373점 이상
- 외국어학부, 학과졸업(단대, 전문대, 대학)
- [외국인接客연수회] 수강자

(2) 처벌의 전력관계

등록의 신청자가 국제관광호텔정비법 위반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3) 등록취소의 전력관계

등록신청자가 과거 등록이 취소되어 그 취소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4) 파산의 선고 등의 관계

성년피후견인, 피보좌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경영상황관계

당해 호텔업, 여관업이 풍속관련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에 대하여 채무가 상당히 큰 경우, 영업수입이 매우 적은 경우 등, 당해 호텔, 여

관의 경영이 매우 불건전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IV. 결론

일본의 여행업 등록기준으로서 자산액은 등록된 단순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출한 금원을 고려하여 내실을 꾀하고 있으며, 여행업무취급관리자 자격제도가 있어 이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여행업무를 관리토록 하여 여행자의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호텔 및 여관의 등록기준을 매우 상세히 규정할 뿐 아니라 고객을 위한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사업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일본의 위와 같은 제도를 참고한다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사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임 동 번

(법무법인 원전 변호사, 게이오대학 대학원)